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3748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권영규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황성필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가단1087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
판 결 선 고 2014. 7. 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13,285,714원에 대하여는 2010. 10. 31.부터 2013. 5. 15.까지, 17,714,286원에 대하여는 2010. 10. 31.부터 2014. 5. 1.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의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공동피고 ■■■, □□□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이상우(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의 대구 칠성동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3. 31.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처이고, ■■■,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0. 6. 7. 원고로부터 2억 2,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0. 6. 7.부터 2010. 10. 30.까지 5회 분할하여 이를 변제하되, 그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골

프렌십장의 영업 등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3,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와 ■■■■, □□□은 2012. 5. 18.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1242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0. 위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심판 수리 전에 망인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망인이 피고의 이름으로 등재하여 둔 차명주식을 승계받았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차명주식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

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84936 판결 등 참조).

2) 상속포기의 효력

갑 제3, 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는 망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소유에 속하는 상속재산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위 주식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 본인의 고유재산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위 상속포기 심판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10,000주(보통주, 권면액: 1주당 10,000원) 중 4,000주는 망인, 3,000주는 피고, 나머지 3,000주는 ●●●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2010. 6. 1. 망인 명의의 4,000주가 피고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 명의의 3,000주는 ▷▷▷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이후 2010. 8. 31. ▷▷▷ 명의의 3,000주도 피고 명의로 이전되어 결국 10,000주 전부가 피고 명의로 등재되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는 독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② ▲▲▲, ◇◇◇, ●●●은 망인과 피고가 공모하여 ●●●이 ▷▷▷에게 위 3,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0. 7. 29.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는 이유로 망인과 피고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경찰은 망인은 기소 의견으로, 피고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위 수사는 종료되었다.

③ 위 사건에서 망인은 ●●● 명의의 3,000주가 ▷▷▷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 "(망인은) 당초 ▲▲▲, ◇◇◇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 하였고, 위 골프연습장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법인을 설립할 때 1인이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이 더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 ◇◇◇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없고 스스로 100%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00주 중 3,000주는 ◇◇◇의 아내인 ●●● 명의로 해 놓고, 4,000주는 본인, 3,000주는 피고의 명의로 해 놓았다. 이후 ▲▲▲, ◇◇◇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 명의의 3,000주를 ▷▷▷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2010. 7. 29.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 기재 부분은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 승낙을 받았으나 구두승낙이어서 입증할 자료는 없다. 위 3,000주를 ▷▷▷ 명의로 이전한 것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이 실제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이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도 "(망인이) 주식을 준다는 말을 한 일이 있어 자기 소유의 주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 명의 주식이 넘어와 있었다. ●●●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도 보지 못하였다. 이후 1달 정도 후에 (망인이) 다시 피고 명의로 주식을 넘겨주라고 하여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4. 13.경부터 2011. 2. 7.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합계 약 6억 원 이상의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망인의 진술 및 피고가 위 액수의 조달할 만한 수익 또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도 망인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속분

한편, 다른 상속인들인 ■■■■, □□□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3,1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3,285,714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3. 5. 15.까지, 나머지 17,714,286원에 대하여는 위 2010. 10. 31.부터 이 사건 2014. 5. 1.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 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4. 5. 1.까지는 각 민법에서 정한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 판결 중 ■■■, □□□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소취하로 인해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홍은아

 판사 이기홍